

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 사유

가. 고등교육법 제6조(학교규칙)

- ① 학교의 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
- ② 학칙의 기재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나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(학칙)

-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·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* 부속교육기관에 국제어학원 추가

본교생 및 일반인, 외국인을 위한 각종 외국어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부속교육기관에 국제어학원을 추가 함.

2. 개정 내용

제 3 조 2 (부속교육기관)

3. 주요 내용

제 3 조 2 (부속교육기관) 본 대학에는 국제평생교육원, 국제어학원을 둔다. 국제평생 교육원과 국제어학원의 세부규칙은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